

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4-7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폐지사유

1회용품 사용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규정되어 있고, 전문신고인의 의도적인 1회용품 위반사례 유발 등 포상금의 부정적 측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의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('08.5.13.)되었으며,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」를 폐지함

3. 폐지근거

- 가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0조(과태료의 부과)
- 나.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('08.5.13.)

4. 폐지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2014년 예산(200천원) 불용처분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4. 7. 10 ~ 2014. 7. 30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마포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
금지급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